

[양식 제4호]

구분		양 부				양 모				
① 양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② 양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성 별		①남 ②여	출 생 연 월 일				
	등록기준지									
	주소									
③ 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명	등록 기준 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등록 기준 지		주민등록번호		-			
④ 기타사항										
⑤ 입양허가법원					허가일자	년 월 일				
⑥ 동의자	부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부모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법원					심판일자	년 월 일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									
양자의 배우자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⑦ 신고인	양부	㉠ 또는 서명			전 화					
					이 메 일					
	양모	㉠ 또는 서명			전 화					
					이 메 일					
	양자	㉠ 또는 서명			전 화					
					이 메 일					
법정대리인	① 부모	부	㉠ 또는 서명		전 화					
					이 메 일					
	② 후견인	모	㉠ 또는 서명		전 화					
					이 메 일					
② 후견인		㉠ 또는 서명		전 화						
					이 메 일					
⑧ 신고인 출석여부			①양부 ②양모 ③양자 ④법정대리인(①부 ②모 ③후견인)							
⑨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성 방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고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유

- 민법 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⑤란 :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입양허가법원 및 허가일자란을 기재합니다.

⑥란 : 동의자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은 경우 동의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⑦란 : 양자란에는 양자가 될 자가 기명날인(또는 서명)하며, 다만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양자란에는 기재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란의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부 서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생략합니다.

1.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

3. 입양동의서 1부(입양에 대하여 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다만 동의한 사람이 입양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

4. 양자가 될 자가 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예시 :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본)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입양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입양 : 입양증서 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 양자가 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입양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입양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입양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양자가 13세 미만인 입양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